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37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20. 4. 21.(화)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구청장
- 제안일 : 2020. 4. 10.
- 회부일 : 2020. 4. 13. (의안번호 : 20-26)

2. 제안이유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전동으로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하는 자치력을 강화함으로써 풀뿌리 가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을 고양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정원 수정 (안 제5조)
-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안 제6조, 안 제8조)
- 동 행정과 주민자치회와의 협력 관계 구체화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20조)
- 주민자치위원의 의무 강화 및 연임 규정 구체화
(안 제9조, 안 제11~안 12조)
-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조항 신설 (안 제22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9조

5. 참고사항(조례 폐기 시 예상되는 현상)

- 2020년 주민자치회 관련 서울시 교부 예산 미교부
 - 시범동 5개동 인건비, 사업비, 간사활동비 등 173,910천원
 - 11동 추가 확대 운영동 사무공간 조성 및 인건비 등 386,506천원
- 2020년 서울시 주민세 환원분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사용 혼란 예상
 - 하반기 주민자치회 해산으로 2020년에 지원받은 주민세 사업비를 상반기 중에만 집행이 가능하여 사업진행 중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 문제 발생

구 분	주민세 징수분	동단위 계획(자율)형 시민참여예산
계	2억 79,617천원	1억6천만원
공덕동	72,721천원	2,000만원
용강동	38,916천원	2,000만원
염리동	동 회의에서 주관(주민30명)	3,000만원
서강동	44,301천원	2,000만원
서교동	51,422천원	2,000만원
성산1동	동 회의에서 주관(주민30명)	3,000만원
성산2동	72,257천원	2,000만원

- 2020년 상반기 중 2021년 주민세 환원분 의제발굴 및 총회 개최 준비 여부에 대한 주민 혼란예상
- 2021년 11개동에 해당하는 주민세 환원 예산을 부여받지 못함

-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불합치
 - 주민자치회 시범기간 종료(2020.6.30.) 이전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위원 임기 (2019.1.1.~2020.12.31.까지)와 불일치 되는 문제 발생
- 서울시 주민자치회 진행방향
 - 2020년 상반기 22개구 138개동, 2022년 424개동 실시 예정

6.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범 실시 추진 중이며 조례안 부칙에 2020년 6월 30일까지인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 기존 시범동을 운용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전동으로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하는 자치력을 강화함으로써 풀뿌리 가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을 고양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5조에 주민자치회 정원을 50명 이내 → 정원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변경함.
 - 안 제6조 제1항에 위원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최초 구성 시로 변경하고 제2항에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1호의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마을사업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이내로 변경함.

-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20조에서는 동 행정과 주민자치회와의 협력 관계 구체화함.
- 안 제9조, 안 제11~안 12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사익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의무 강화 및 연임 규정 구체화 신설함.
- 안 제22조 제5항에 지원조직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제12조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조항 신설함.

○ 부칙개정안 내용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 제2조(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도 적용함.
- 제3조(주민자치위원회 해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개정함.

○ 검토의견으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이 주인이 되는 생활자치 구현”을 위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미비점인 주민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

소극적인 주민 참여 방식을 자치분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동에 다양한 주민참여 조직을 융합하고 지속가능한 주민자치회가 되기 위해서는 5개동 시범사업기간동안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조례에 반영하여 전동으로 확대 실시할 때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개정사항 중 주민자치회를 운용할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량 제고로 주민자치교육 연 6시간 이상 이수 의무 및 연임조건 명시, 사익추구 금지 조항 신설 및 위원의 중립의무 강조한 내용과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 요건 변화로 합리적 기준 마련, 주민자치회 정원을 동별 여건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인원범위 조정위원 결원 시 주민자치회에서 공개 추첨을 위한 추첨위원회 구성하고
-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 수립 및 이행 시 동장의 적극적인 협력·지원으로 민관협력의 여건 조성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업무 수행에 있어 주민자치위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 및 구청장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한 조례안은 기존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들을 개정사항에 반영한 점은 잘 된 점이라 생각됨.
- 다만,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적인 장점을 확대 발굴했다면 주민의 만족도 평가를 반영하여 주민자치회 전동확대에 따른 구민갈등 해소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지원금이 중단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민간위탁기관이나 중간지원조직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며, 주민자치회에서의 간사의 중요성을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간사비용을 현실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